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704호, '25.1.21. 공포, '25.7.22 시행)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임

3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제1항 중 “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.”를 “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”를 “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,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10조의2 제2항 중 “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”는 “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”으로 하며, “상환기간 연장·상환 유예 신청서에”는 “상환기간 연장·상환 유예·장기분할상환 신청서에”로 한다.

제10조의2 제3항 중 “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의”를 “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의”로 한다.

제10조의2 제5항 중 “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”를 “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절차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2(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)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채무자”라 한다)의 대출금 <u>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.</u>	제10조의2(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대출금 <u>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</u>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2. --- <u>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,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함으로써</u>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 <u>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으려는</u> 채무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<u>상환기간 연장·상환 유예 신청서에</u>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 <u>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</u> ----- - <u>상환기간 연장·상환 유예·장기분할상환 신청서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<u>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의</u>	③ ----- ----- --- <u>상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</u>

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	<u>또는 장기분할상환의</u>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<u>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⑤ ----- ----- 상 <u>환기간의 연장, 상환 유예 또는 장</u> <u>기분할상환 절차에</u>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44